

●법무부령 제1165호

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6년 10월 01일

법무부장관 

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령

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사법경찰관”을 “사법경찰관(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고등검찰청 검사장”을 “광역공소청장”으로, “고등검찰청에”를 “광역공소청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고등검찰청 검사장”을 각각 “광역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·제2항,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고등검찰청 검사장”을 각각 “광역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4호 중 “검찰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경찰청 등 수사기관”을 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경찰청,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고등검찰청 검사장”을 “광역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해당 고등검찰청”을 “광역공소청장이 해당 광역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고등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”을 “광역공소청장은 해당 광역공소청 소속 형사법무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고등검찰청 검사장”을 “광역공소청장”으로, “검찰청 소속”을 “공소청 소속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, “고등검찰청(이하 “관할 고등검찰청”이라 한다)”을 “광역공소청(이하 “관할 광역공소청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“관할 고등검찰청”을 각각 “관할 광역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검찰청의”를 “공소청의”로, “검찰청에”를 “공소청에”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고등검찰청 검사장”을 “광역공소청장”으로, “검찰청의”를 “공소청의”로 한다.

제29조 중 “고등검찰청 검사장”을 “광역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“○○고등검찰청”을 각각 “○○광역공소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○○고등검찰청”을 각각 “○○광역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제4호 중 “검찰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경찰청 등 수사기관”을 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중대범죄수사청, 경찰청 등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“○○고등검찰청”을 각각 “○○광역공소청”으로, “○○경찰서”를 각각 “○○경찰서(또는 ○○지방중대범죄수사청)”으로, “경찰 사건번호”를 각각 “사건

번호” 로, “○○경찰서 사법경찰관” 을 각각 “○○경찰서 사법경찰관(또는 ○○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)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중 “ “○○경찰서” 를 각각 “○○경찰서(또는 ○○지방중대범죄수사청)” 으로, “경찰 사건번호” 를 “사건번호” 로 “고등검찰청에” 를 “광역공소청에” 로, “○○고등검찰청” 을 “○○광역공소청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 중 “○○지방검찰청 검사장(○○지방검찰청 ○○지청 지청장), ○○경찰서장” 을 “○○지방공소청장(○○지방공소청 ○○지청 지청장), ○○경찰서장(또는 ○○지방중대범죄수사청 장)” 으로, “○○경찰서” 를 각각 “○○경찰서(또는 ○○지방중대범죄수사청)” 으로, “○○지방검찰청(○○지방검찰청 ○○지청)” 을 “○○지방공소청(○○지방공소청 ○○지청)” 으로, “○○고등검찰청 검사장” 을 “○○광역공소청장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,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(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 공포, 2026. 10. 2. 시행)되고,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·직무 범위·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「공소청법」이 제정(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 공포, 10. 2. 시행)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.
<법무부 제공>